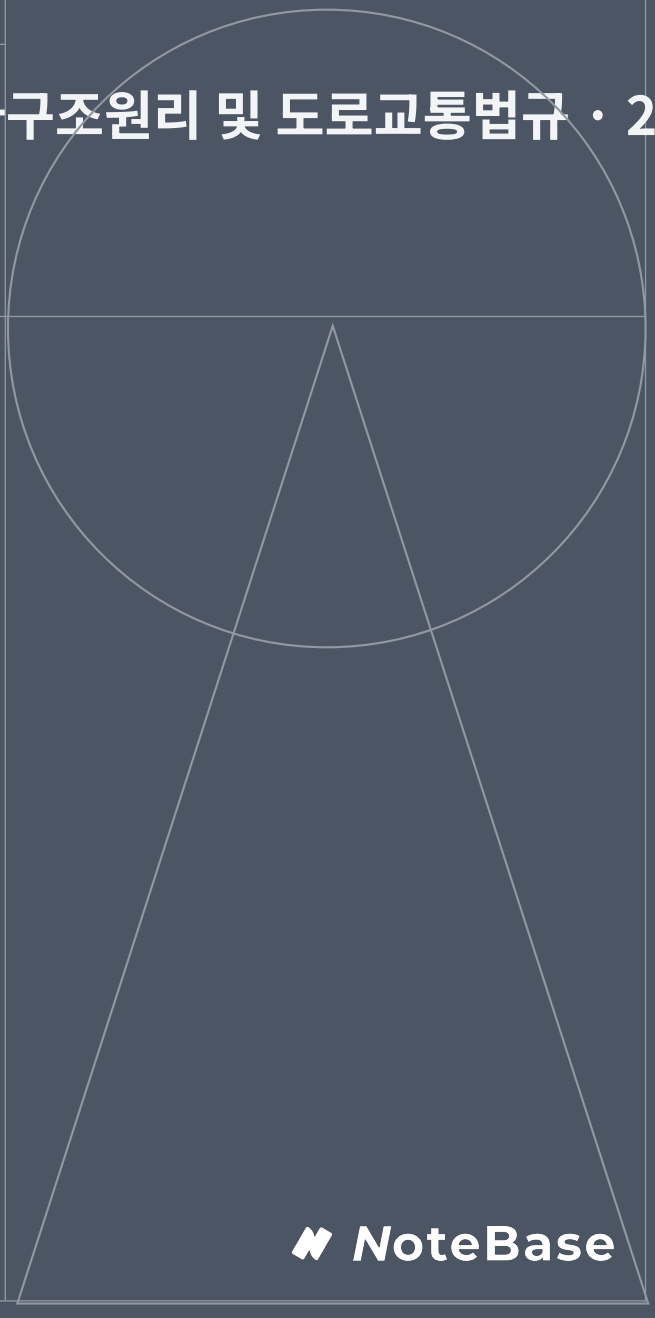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· 2024 ·



NoteBase
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· 2024 · 2월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· 2024 · 2월

문 1. 냉각수에 첨가하는 부동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에틸렌글리콜

② 아초산에틸

③ 글리세린

④ 메탄올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아초산에틸은 **연료의 착화를 돕는 연소 촉진제**로 쓰이며, 냉각수의 동결을 막는 부동액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선지별 해설

부동액은 냉각수의 어는점을 낮추어 추운 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다.

① O: 에틸렌글리콜은 물과 섞여 **냉각수의 어는점을 낮추는** 대표적인 부동액 원료이다. 휘발성이 낮아 엔진이 가열되어도 쉽게 증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.

② X: 아초산에틸은 엔진 시동을 돕는 **연소 촉진제**로 쓰이는 물질이다. 냉각수에 넣는 부동액 원료로 분류하지 않으며, 냉각수의 동결 방지에는 에틸렌글리콜 같은 물질을 사용한다.

③ O: 글리세린은 물과 잘 섞이는 다가알코올로, 수용액의 어는점을 낮춘다. 이러한 성질 때문에 **부동액 원료로 사용되어 왔다**.

④ O: 메탄올은 물과 섞어 어는점을 낮출 수 있어 알코올계 부동액 원료로 사용되어 왔다. 다만 **휘발성이 커서** 엔진이 가열되면 증발로 손실되기 쉽다.

NoteBase

문 2.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타입 중에서 엔진이 구동바퀴에 구동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타입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ㄱ. 직렬형 타입
ㄴ. 병렬형 타입
ㄷ. 직·병렬형(복합형) 타입

① ㄱ
② ㄱ, ㄷ
③ ㄴ, ㄷ
④ ㄱ, ㄴ, ㄷ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직렬형은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공급하고, 그 전기로 모터가 바퀴를 구동한다. 따라서 **엔진이 구동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 아니다**.

보기별 해설

ㄱ. 직렬형: 직접 전달 불가. 엔진은 발전기를 돌리고, 발전된 전기를 이용하는 모터가 구동바퀴를 구동한다. 엔진과 바퀴 사이에 **기계적으로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연결이 없으므로**,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도 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것은 모터이다.

ㄴ. 병렬형: 직접 전달 가능. 엔진과 모터가 각각 구동바퀴에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. 엔진 동력이 발전과 모터 구동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 **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바퀴에 전달**될 수 있으므로, 엔진이 구동바퀴를 직접 구동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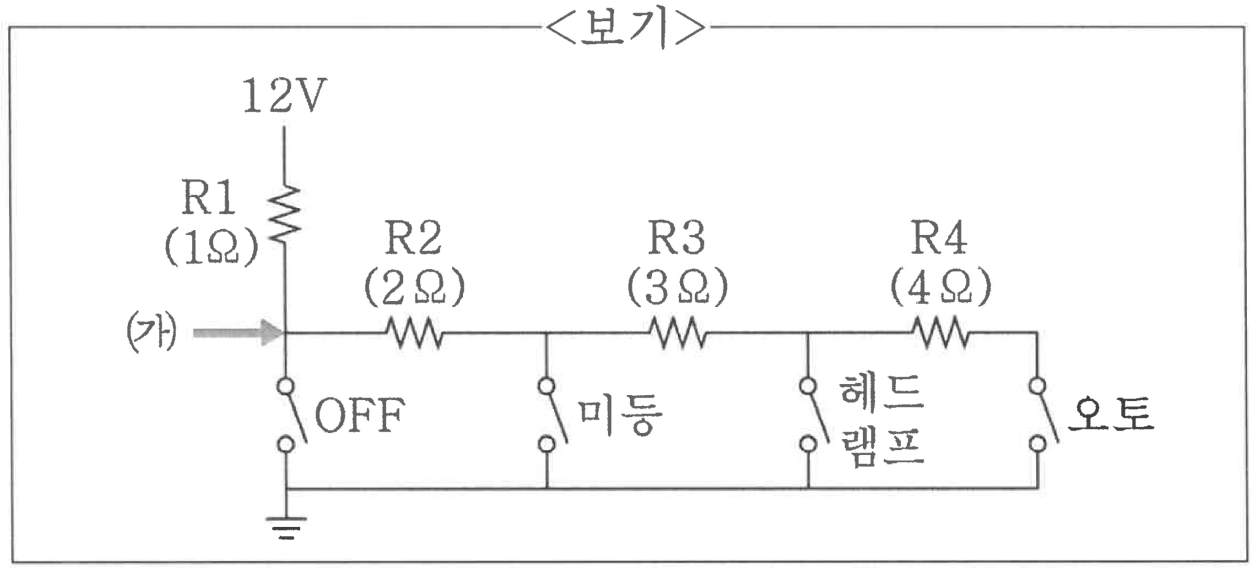
ㄷ. 직·병렬형(복합형): 직접 전달 가능. 직렬형의 발전·모터 구동 경로와 병렬형의 기계적 동력 전달 경로를 함께 갖춘다. 따라서 운전 상태에 따라 모터로 바퀴를 구동할 수 있고, **엔진 동력을 기계적으로 바퀴에 전달**할 수도 있다. 항상 엔진이 바퀴를 구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,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점이 기준이다.

엔진이 구동바퀴에 구동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타입은 ㄴ과 ㄷ이며,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3. <보기>의 회로에서 헤드램프 스위치가 ON이 되면 (가)에서의 전압[V]은?

<보기>



① 6

② 8

③ 10

④ 12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헤드램프 스위치를 켜면 1 Ω, 2 Ω, 3 Ω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전류가 2 A 흐른다. (가)의 전압은 전원 12 V에서 **1 Ω 저항의 전압 강하 2 V를 뺀 10 V**이다.

NoteBase

계산 과정

회로 연결: 헤드램프 스위치만 ON이면 전류는 12 V 전원에서 1 Ω 저항, (가), 2 Ω 저항, 3 Ω 저항을 거쳐 접지로 흐른다. 오토 스위치는 열려 있으므로 **4 Ω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**. 도선과 닫힌 스위치의 저항은 무시하고, 접지 전압을 0 V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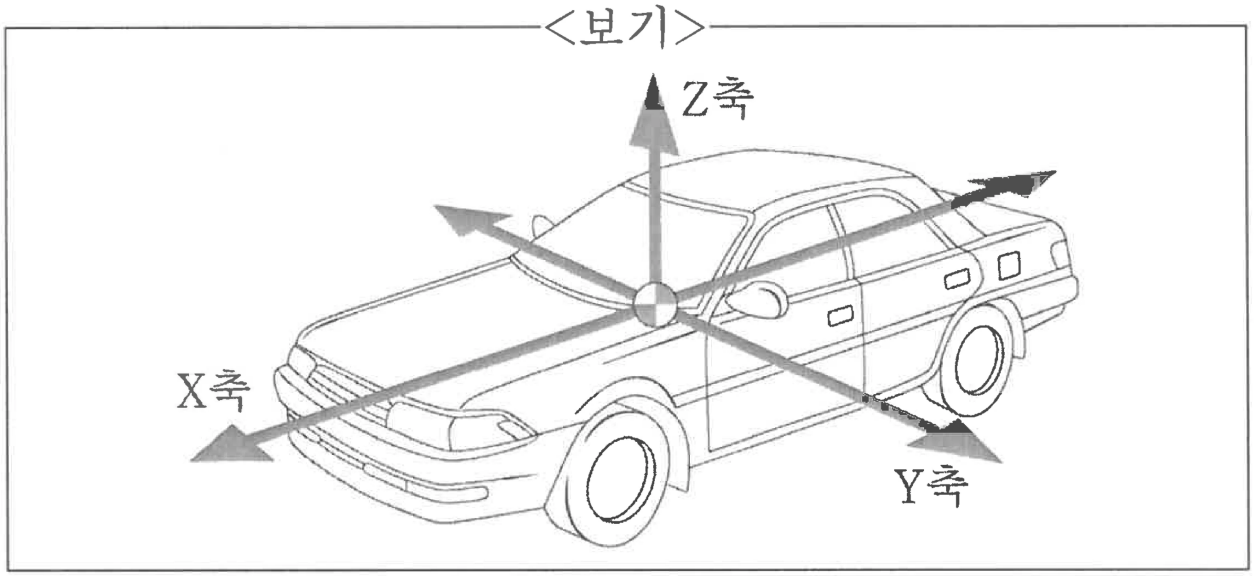
전체 저항과 전류: 전류가 흐르는 세 저항은 직렬이므로 전체 저항은 1 + 2 + 3 = 6 Ω이다. 직렬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같은 전류가 흐르므로, 옴의 법칙 $I = \frac{V}{R}$에 따라 회로 전류는 $I = \frac{12}{6} = 2\text{A}$이다.

(가)의 전압: 전원에서 (가)까지는 1 Ω 저항만 지나므로, 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를 구한다. 옴의 법칙 $V = IR$에 따라 전압 강하는 $2 \times 1 = 2$ V이다. 따라서 (가)의 접지 기준 전압은 **전원 전압에서 그 앞 저항의 전압 강하를 뺀 값**인 $12 - 2 = 10$ V이며, ③의 10 V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4. <보기>를 참고하여, 현가장치 스프링 위 질량 진동의 명칭과 이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?

<보기>



① 바운싱(bouncing) — 차체가 Z축 방향과 평행 운동을 하는 고유진동

② 스키딩(skidding) — 차체가 X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고유진동

③ 롤링(rolling) — 차체가 Y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고유진동

④ 피칭(pitching) — 차체가 Z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고유진동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바운싱은 차체 전체가 **Z축에 평행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** 진동이다. 축을 중심으로 차체가 기울어지는 회전 진동과 구별한다.

NoteBase

선지별 해설

① O: 그림에서 Z축은 차체의 위아래 방향이다. 바운싱은 차체 전체가 **Z축에 평행하게 상하로 움직이는 병진 진동**이므로 명칭과 설명이 일치한다.

② X: 그림의 X축은 차체의 앞뒤를 잇는 길이 방향이다. 이 축을 중심으로 차체의 좌우가 번갈아 오르내리는 회전 진동은 스키딩이 아니라 **롤링**이다.

③ X: 롤링의 회전축은 Y축이 아니라 **X축**이다. 그림의 Y축은 차체의 좌우를 잇는 폭 방향이며, 이 축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번갈아 오르내리는 회전 진동은 피칭이다.

④ X: 피칭은 **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진동**이다. Z축을 중심으로 차체의 앞부분이 좌우로 방향을 바꾸듯 흔들리는 회전 진동은 요잉(yawing)이다.

NoteBase

문 5. 자동변속기 유체 클러치 오일의 구비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비중이 낮을 것

② 점도가 낮을 것

③ 비등점이 높을 것

④ 응고점이 낮을 것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유체 클러치는 순환하는 오일의 운동에너지로 동력을 전달하므로, 같은 작동 조건에서는 **비중이 큰 오일**이 더 큰 토크를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. 따라서 '비중이 낮을 것'은 '비중이 높을 것'으로 고쳐야 한다.

선지별 해설

① X: 비중은 물의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밀도이다. 유체 클러치는 펌프가 오일을 가속하고, 그 오일이 터빈에 힘을 주어 회전력을 전달한다. 같은 크기와 회전 조건에서는 밀도가 클수록 전달할 수 있는 토크가 커지므로, 구비 조건은 **비중이 높을 것**이다.

② O: 점도는 유체가 흐르려 할 때 생기는 내부 저항의 정도이다. 점도가 낮으면 오일의 **유동 저항이 작아져** 순환 중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. 다만 윤활과 밀봉에 필요한 점도는 유지해야 하므로, 무조건 묽은 오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낮은 점도가 요구된다.

③ O: 유체 클러치는 작동 중 미끄럼에 따른 손실로 열이 발생한다. **비등점이 높으면** 온도가 올라가도 오일이 쉽게 끓지 않아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, 안정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.

④ O: **응고점이 낮으면** 추운 환경에서도 오일이 쉽게 굳지 않는다. 저온에서 시동할 때도 오일이 흘러 순환할 수 있어 동력 전달에 유리하다.

NoteBase

문 6. <보기>의 공전속도 조절장치에 해당하는 방식은?

<보기>
컴퓨터로부터의 작동 펄스신호에 의해 좌우 방향으로 15° 만큼씩 단계적으로 마그네틱 로터가 일정하게 회전하여 마그네틱 축과 나사(screw)로 연결된 밸브의 길이가 변화하여 바이패스 되는 공기량을 증감시켜 공전속도를 조절하는 장치

① ISC-서보 방식(idle speed control servo type)
② ISA 방식(idle speed actuator type)
③ 스텝 모터 방식(step motor type)
④ 전자제어 스로틀제어 방식(electronic throttle control type)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펄스신호에 따라 로터가 **일정 각도씩 단계적으로 회전**하는 것이 스텝 모터 방식의 특징이다. 이 회전이 나사 연결부를 통해 밸브의 전후 이동으로 바뀌어 바이패스 공기량을 조절한다.

핵심 풀이

스텝 모터는 제어 펄스에 따라 로터를 일정 각도씩 회전시키는 모터이다. 보기의 '15° 만큼씩 단계적으로 회전'한다는 설명이 이를 식별하는 단서이다. 로터가 회전하면 나사로 연결된 밸브 축이 전후로 이동하고, 밸브와 시트 사이의 틈이 달라진다. 이 틈을 통해 스로틀 밸브를 우회하는 공기량이 증감하므로 공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. 즉, **단계적 회전 → 밸브의 전후 이동 → 바이패스 공기량 조절**이라는 작동 원리가 스텝 모터 방식에 해당한다.

전자제어 스로틀제어 방식은 **스로틀 밸브 자체의 열림 정도**를 제어하여 흡입 공기량을 조절한다. 보기처럼 나사로 연결된 별도의 밸브를 움직여 바이패스 공기량을 조절하는 구조와 구별된다. 컴퓨터가 공전속도를 제어한다는 공통점보다, 로터가 펄스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전한다는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판단 기준이다.

NoteBase

문 7. <보기>에서 기동전동기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ㄱ. 계자는 전기자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부분이다.
ㄴ. 정류자는 자계를 발생시키는 부분이다.
ㄷ. 전기자는 토크가 발생하는 부분이다.
ㄹ.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축전지의 주 전류를 단속하는 부분이다.

① ㄱ, ㄷ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ㄷ, ㄹ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전기자는 자계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아 **회전 토크를 발생**시킨다.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주접점을 여닫아 **축전지에서 기동전동기로 흐르는 대전류를 단속**한다.

보기별 해설

ㄱ. X: 계자는 **자계를 발생시키는 부분**이다. 전기자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은 브러시가 정류자와 접촉하여 수행한다.

ㄴ. X: 정류자는 브러시와 함께 전기자 코일의 **전류 방향을 회전에 맞추어 바꾸는 부분**이다. 이를 통해 회전 토크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게 한다. 자계를 발생시키는 부분은 계자이다.

ㄷ. O: 전기자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갖춘 회전 부분이다. 계자가 만든 자계 속에서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력이 작용하여 **축을 돌리는 토크**가 발생한다.

ㄹ. O: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전자석의 힘으로 주접점을 여닫는다. 주접점이 닫히면 축전지의 대전류가 기동전동기에 공급되고, 열리면 차단되므로 **주 전류를 단속**하는 부분이다.

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, ④의 조합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8. <보기>는 엔진 회전수와 엔진 부하에 따라 흡입통로를 제어하여 출력을 향상시키는 가변 흡입 장치(VIS: Variable Induction System)의 작동에 대한 설명이다. (가), (나), (다)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<보기>
컴퓨터는 (가)에 VIS 밸브를 (나) 일반 엔진보다 흡입 통로가 (다) 지게 되고, 이에 따라 흡입 관성력이 증가함으로써 흡입효율이 높아져 엔진 출력이 향상된다.

① (가): 저속 및 저부하 시, (나): 닫아, (다): 길어
② (가): 저속 및 저부하 시, (나): 열어, (다): 짧아
③ (가): 고속 및 고부하 시, (나): 닫아, (다): 짧아
④ (가): 고속 및 고부하 시, (나): 열어, (다): 길어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저속에서는 **긴 흡입 통로**를 이용해 공기의 관성 효과로 실린더에 공기가 더 잘 채워지도록 한다. 이때 VIS 밸브를 닫는 것은 흡입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**짧은 통로를 막아 긴 통로로 공기를 보내는** 제어이다.

빈칸별 해설

(가) 저속 및 저부하 시: 보기의 설명은 긴 흡입 통로를 이용해 저속 영역의 흡입효율을 높이는 작동에 해당한다.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는 공기의 관성 효과를 활용하도록 통로를 길게 하고, 고속 영역에서는 많은 공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통로를 짧게 한다.

(나) 닫아: VIS 밸브를 닫으면 **짧은 흡입 경로가 차단**되어 공기는 긴 경로를 따라 흐른다. 따라서 밸브를 닫는다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. 반대로 밸브를 열면 짧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.

(다) 길어: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는 공기가 우회하는 경로를 따라 들어가므로 유효 흡입 통로가 길어진다. 통로 안에서 움직이는 공기는 **계속 흐르려는 관성**을 가지며, 이를 이용하면 피스톤의 흡입 작용이 약해지는 동안에도 공기의 유입을 도울 수 있다. 이처럼 저속 영역에서 실린더에 공기가 더 잘 채워지도록 하여 흡입효율과 엔진 출력을 높인다.

따라서 (가) '저속 및 저부하 시', (나) '닫아', (다) '길어'의 조합이며,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9.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베이퍼 록(vapor lock)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긴 내리막길에서 과도하게 풋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

② 브레이크 오일 변질에 의한 비등점의 저하 및 불량한 오일을 사용할 때

③ 마스터 실린더,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 손상으로 잔압이 저하되었을 때

④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 간격이 넓어 과냉될 때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④의 '간격이 넓어 과냉될 때'는 베이퍼 록의 원인이 아니다. 베이퍼 록은 브레이크액이 **과열되어 끓으면서 생긴 기포**가 유압 전달을 방해하는 현상이다.

선지별 해설

베이퍼 록은 유압 제동장치의 브레이크액이 끓어 증기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다. 액체와 달리 기포는 쉽게 압축되므로, 페달을 밟아도 그 힘이 제동장치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.

① O: 긴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마찰열이 계속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과열된다. 이 열이 브레이크액으로 전달되어 **브레이크액이 비등점에 도달**하면 기포가 생길 수 있다.

② O: 브레이크액이 변질되어 비등점이 낮아지거나 비등점이 낮은 불량한 액을 사용하면, 정상적인 액보다 **낮은 온도에서 끓기 쉽다**. 따라서 제동 중 발생한 열로 기포가 생겨 베이퍼 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.

③ O: 잔압은 페달에서 발을 뗀 뒤에도 유압 회로에 남아 있는 압력이다. 잔압을 유지하는 드럼식 유압 제동장치에서 부품 손상으로 **잔압이 저하되면** 브레이크액의 기화를 억제하는 압력도 낮아진다. 이 때문에 가열된 브레이크액에서 기포가 생기기 쉬워진다.

④ X: 드럼과 라이닝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과냉되는 것은 브레이크액이 끓어 기포가 생기는 원인이 아니다. 이와 관련된 발생 원인은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드럼과 라이닝이 계속 접촉하는 '끌림'으로 **과열될 때**이다. 이때 마찰열이 브레이크액에 전달되어 베이퍼 록이 발생할 수 있다.

NoteBase

문 10.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예열 플러그의 종류 중 실드형 예열 플러그(shield type glow plug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예열 플러그 저항기를 장착하여 코일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.

② 열선 코일과 보호 금속튜브 사이에는 내열성의 절연 분말이 충전되어 있다.

③ 구조상 적열까지의 시간이 코일형 예열 플러그에 비해 조금 길다.

④ 코일형 예열 플러그에 비해 1개당의 발열량과 열용량이 크므로 시동성이 향상된다.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예열 플러그 저항기로 전압을 낮추어 코일을 보호하는 것은 **저전압 코일형의 예열회로**에 관한 설명이다.
실드형에 별도 저항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선지별 해설

① X: 저전압 코일형은 예열회로에 저항기를 직렬로 넣어 축전지 전압과 플러그에 필요한 전압의 차이만큼 전압을 낮추고 코일 손상을 막는다. 이를 실드형의 필수 조건으로 옮긴 것이 잘못이다. 실드형이라는 이유만으로 **별도의 예열 플러그 저항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**.

② O: 실드형은 열선 코일을 보호 금속튜브 안에 넣고, 그 사이를 내열성 절연 분말로 채운 구조이다. 이 분말은 코일과 튜브 사이의 **전기적 절연을 유지하면서 열을 전달**하므로, 코일이 튜브와 단락되지 않으면서 튜브를 가열할 수 있다.

③ O: 여기서 비교하는 일반적인 실드형은 코일에서 발생한 열이 절연 분말을 거쳐 보호 금속튜브로 전달되는 간접 가열 구조이다. 열선이 노출된 코일형과 달리 **보호 금속튜브까지 가열**해야 하므로 적열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길다. 급속예열형 등으로 개선된 제품의 가열시간을 모든 실드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.

④ O: 코일형과 비교한 일반적인 실드형은 **1개당 발열량과 열용량이 크다**. 발열량이 크면 연소실을 가열하는 데 공급할 수 있는 열이 많고, 열용량이 크면 같은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도 크다. 충분히 예열된 뒤에는 보유한 열이 연소실의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되어 시동성이 향상된다.

NoteBase

문 11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상 시·도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자동차의 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② 자동차의 색칠이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③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④ 자동차가 지정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

정답 4번

①

자동차의 **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면**
시·도경찰청장은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(지정의 취소 등)
①시 · 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30, 2020.12.31>
1. 자동차의 색칠 · 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②

자동차의 **색칠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**도 지정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(지정의 취소 등)
①시 · 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30, 2020.12.31>
1. 자동차의 색칠 · 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NoteBase

③

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시·도경찰청장은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(지정의 취소 등)
①시 · 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30, 2020.12.31>
2.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④

정기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. 지정 취소 사유는 색칠·사이렌·경광등의 구조 부적합, 지정 목적 외 사용,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자동차 사용 불능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(지정의 취소 등)
①시 · 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30, 2020.12.31>
1. 자동차의 색칠 · 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2.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NoteBase

문 12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상 <보기>의 (가), (나)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<보기>
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(고속도로를 제외한다)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1.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____ (가) 킬로미터 이내
2.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____ (나) 킬로미터 이내

① (가): 30, (나): 20
② (가): 30, (나): 25
③ (가): 35, (나): 20
④ (가): 35, (나): 25

정답 2번

①
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그 총중량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**매시 30킬로미터 이내**로 통행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(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)
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(고속도로를 제외한다)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1.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

②
총중량 2,000kg 미만인 자동차를 그 총중량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와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**시속 25km 이내**로 운행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(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)
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(고속도로를 제외한다)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1.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
2.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

NoteBase

문 13. 「도로교통법」 제49조의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경우

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이지만,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한 차를 운전한 경우

③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 서행운전 하는 경우

④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시비 ·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

정답 2번

①

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는 **운전해서는 안 된다**. 다만, 요인 경호용·구급용·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.

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
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8.13, 2014.11.19, 2015.8.11, 2017.7.26, 2018.3.27, 2020.6.9, 2020.12.22, 2021.10.19>
3.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(可視光線)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요인(要人) 경호용, 구급용 및 장의용(葬儀用) 자동차는 제외한다.

②

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준 부적합 장치를 한 차는 운전이 금지되지만, **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는 예외**이다.

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
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8.13, 2014.11.19, 2015.8.11, 2017.7.26, 2018.3.27, 2020.6.9, 2020.12.22, 2021.10.19>
4.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NoteBase

③

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**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한다**.

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
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8.13, 2014.11.19, 2015.8.11, 2017.7.26, 2018.3.27, 2020.6.9, 2020.12.22, 2021.10.19>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
다.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

④

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시비·다툼을 하여 **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**.

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
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8.13, 2014.11.19, 2015.8.11, 2017.7.26, 2018.3.27, 2020.6.9, 2020.12.22, 2021.10.19>
5. 도로에서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 ·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

NoteBase

문 14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상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·장치가 아닌 것은?

① 보행보조용 의자차

②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

③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

④ 전동이륜평행차

정답 4번

①

보행보조용 의자차는 **너비 1미터 이하이면 차마에서 제외**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(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· 장치)
①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개정 2023.10.19>
2. 보행보조용 의자차(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)
② 법 제2조제17호 가목 5)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,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신설 2023.10.19>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· 장치

②

원동기장치자전거는 **너비 1미터 이하이고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 차마에서 제외**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(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· 장치)
①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개정 2023.10.19>
6.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
② 법 제2조제17호 가목 5)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,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신설 2023.10.19>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· 장치

NoteBase

③

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하며, **너비 1미터 이하이면 차마에서 제외**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(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· 장치)
①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개정 2023.10.19>
2. 보행보조용 의자차(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)
② 법 제2조제17호 가목 5)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,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신설 2023.10.19>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· 장치

④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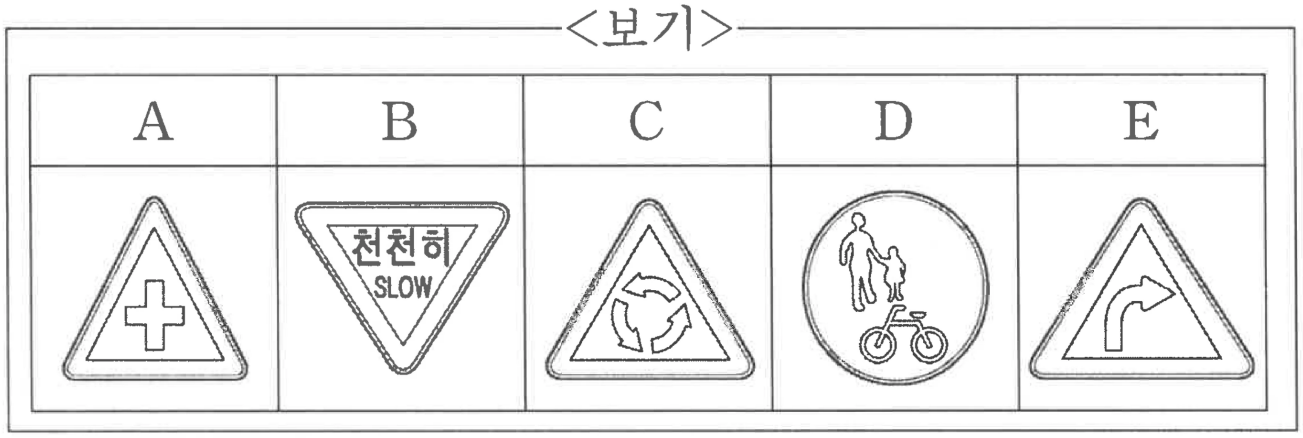
전동이륜평행차는 **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·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**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(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· 장치)
①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개정 2023.10.19>
1. 유모차
2. 보행보조용 의자차(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)
3. 노약자용 보행기
4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(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)
5. 동력이 없는 손수레
6.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
7. 도로의 보수 · 유지,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 · 장치(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)
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)에서 "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,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· 장치"란 다음 각 호의 기구 · 장치를 말한다. <신설 2023.10.19>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· 장치
2. 실외이동로봇

NoteBase

문 15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상 <보기>의 안전표지 종류 중 주의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

① A, C
② B, D
③ B, E
④ C, D

정답 2번

A

삼각형 안에 십자 모양이 있는 A는 **＋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1호나목 일련번호 101
Ⅱ. 개별기준

1.주의표지

나. 종류별 기준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1IQFBa06Lzdd9-lkmeaim2Vjgt5QI9X0.webp

NoteBase

B

역삼각형 안에 '천천히 SLOW'가 적힌 B는 **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규제표지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2호나목 일련번호 226
Ⅱ. 개별기준

2.규제표지

나. 종류별 기준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RkWlVNDWJuwqpX_LO3ZsgqPD7zBY784U.webp

C

삼각형 안에 원을 이루는 화살표가 있는 C는 **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1호나목 일련번호 109
Ⅱ. 개별기준

1.주의표지

나. 종류별 기준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833o5yir6I07ZV5YslrZIctRiceAxWL7.webp

NoteBase

D

원 안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그려진 D는 **자전거 ·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지시표지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3호나목 일련번호 303
Ⅱ. 개별기준

3.지시표지

나. 종류별기준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G-gNil72mPGvBj4BWWsbzVb8wjnwc-Ts.webp

E

삼각형 안에 오른쪽으로 굽은 화살표가 있는 E는 **우로 굽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1호나목 일련번호 111
차.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
Ⅱ. 개별기준 제1호나목의 111부터 114까지의 만드는 방식란, 같은 II 제2호나목의 212부터 216까지의 만드는 방식란 및 같은 II 제3호나목의 305부터 315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, 차로별,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,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

Ⅱ. 개별기준

1.주의표지

나. 종류별 기준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NeAssLOlxp0_IGqvPVSo8UYdSCEgzNb7.webp

NoteBase

문 16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상 승합자동차 운전 중 범칙금액 7만원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아닌 것은?

① 속도위반(40km/h 초과 60km/h 이하)

② 신호·지시 위반

③ 앞지르기 금지 시기·장소 위반

④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
정답 1번

①

승합자동차로 제한속도를 40km/h 초과 60km/h 이하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7만원이 아니라 **10만원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pmSG_tsh9ANo8tiiCXnOHUMyycWOaB_R.webp

②

승합자동차 운전 중 신호·지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**7만원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pmSG_tsh9ANo8tiiCXnOHUMyycWOaB_R.webp

NoteBase

③

승합자동차 운전 중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·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범칙금은 **7만원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9호
비고
1. 위 표에서 "승합자동차등"이란 승합자동차, 4톤 초과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.
2. 위 표에서 "승용자동차등"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3. 위 표에서 "이륜자동차등"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4. 위 표에서 "손수레등"이란 손수레,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.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운전자)(제93조제1항 관련)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SzdW_2jM6dMZu9WWu62lgzgEri8cKZ1N.webp

④

승합자동차 운전 중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**7만원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
비고
1. 위 표에서 "승합자동차등"이란 승합자동차, 4톤 초과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.
2. 위 표에서 "승용자동차등"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3. 위 표에서 "이륜자동차등"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4. 위 표에서 "손수레등"이란 손수레,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.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운전자)(제93조제1항 관련)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eftDqeCcYohUhydKNjpo-6y11e9V5VBr.webp

NoteBase

문 17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상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.

② 교통성실장은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에 속한다.

③ 교통질서장은 2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과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실시한다.

정답 4번

①

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**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**이 있고, **현재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**에게 수여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(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)
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,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<개정 2010.12.31>
1. 교통안전장 : 30년 이상
2. 교통삼색장 : 25년 이상
3. 교통질서장 : 20년 이상
4. 교통발전장 : 15년 이상
5. 교통성실장 : 10년 이상

②

교통성실장은 무사고운전자의 운전경력별 표시장 중 하나로, **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**에 해당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(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)
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,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<개정 2010.12.31>
5. 교통성실장 : 10년 이상

NoteBase

③

교통질서장의 운전경력 기준은 **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20년 이상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(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)
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,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<개정 2010.12.31>
3. 교통질서장 : 20년 이상

④

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연 1회 수여하지만, **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수시로** 수여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7조(표시장의 수여)
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,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.

NoteBase

문 18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상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

②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③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④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정답 4번

①

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**20일 이내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(임시운전증명서)
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,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 다만,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31>

②

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을 **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**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(임시운전증명서)
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,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 다만,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31>

③

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을 **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**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(임시운전증명서)
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,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 다만,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31>

NoteBase

④

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**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**할 수 있다. 선지의 '30일'이 틀리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(임시운전증명서)
다만,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<개정 2010.12.31>

NoteBase

문 20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상 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(燈火)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노면전차: 전조등, 미등, 번호등 및 실내조명등

② 견인되는 차: 미등·차폭등 및 번호등

③ 원동기장치자전거: 전조등 및 미등

④ 승합자동차: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, 차폭등, 미등, 번호등과 실내조명등

정답 1번

①

노면전차는 밤에 운행할 때 전조등, 차폭등, 미등 및 실내조명등을 켜야 한다. 선지는 **차폭등을 빠뜨리고 번호등을 포함**하였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(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)
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(燈火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9.3.26, 2020.12.31>
4. 노면전차: 전조등, 차폭등, 미등 및 실내조명등

②

견인되는 차가 밤에 도로에서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는 **미등·차폭등 및 번호등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(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)
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(燈火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9.3.26, 2020.12.31>
3. 견인되는 차: 미등 · 차폭등 및 번호등

③

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밤에 도로에서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는 **전조등 및 미등**이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(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)
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(燈火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9.3.26, 2020.12.31>
2. 원동기장치자전거: 전조등 및 미등

NoteBase

④

승합자동차는 밤에 도로에서 운행할 때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, 차폭등, 미등, 번호등을 켜야 하며, **실내조명등도 점등 대상에 포함**된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(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)
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(燈火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9.3.26, 2020.12.31>
1. 자동차: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(前照燈), 차폭등(車幅燈), 미등(尾燈), 번호등과 실내조명등(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)

NoteBase